

지구헌장

1981년 4월 4일 제정
1981년 7월 1일 시행
1984년 5월 3일 개정
1988년 4월 18일 개정
1989년 3월 25일 개정
1995년 3월 25일 개정
1997년 4월 2일 개정
1998년 3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G(경남중부)지구 (DIST. 355-G LIONS CLUBS INTERNATIONAL)라 부른다.

제 2 조(목적)

국제라이온스협회 355-G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그 인준하에 “자유, 지성, 우리나라의 안전”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라는 슬로건과 “우리는 봉사한다” (We Serve)라는 모토를 가지고 결합되었다.

제 3 조(구성)

본 지구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내에 조직된 라이온스 클럽, 레오클럽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사무국)

본 지구의 사무국은 마산시내에 둔다.

제 2 장 지구연차대회

제 5 조(소집)

지구 연차대회가 복합지구 연차대회로 소집된 경우에는 총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단일 지구 연차대회 소집은 총재가 하되 년 1회 개최하며 개최지는 지구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의결)

1. 지구 연차대회는 지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대의원 대회는 연차대회 이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연차대회에서 동 대의원 대회 결의 사항을 선포한다.
2. 대의원 대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의원 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연차대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가) 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출
 - 나) 감사선출
 - 다) 헌장제정 및 개정
 - 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마) 총재 및 지구임원회의 부의사항

제 7 조(의장)

지구연차대회, 대의원대회 의장은 총재가 되고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8 조(대의원)

대의원은 관내 소속클럽 회원 10명에 1인식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원의 단수가 10명 이내 일때는 사사오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 3 장 선거

제 9 조(총재 및 지구부총재 후보자격)

1. 지구총재는 국제협회 임원으로서 그 자격은 국제헌장 제4조 7항에 따른다.
 - 가)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준 지구 내의 굳 스탠딩 차터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 이어야 하며,
 - 나) 소속클럽 또는 단일, 준지구 간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얻어야 하며,
 - 다) 지구총재로 선출된 소속지구 내 부총재로 현재 역임하고 있는자
 - 라) 현직 지구부총재가 지구총재로 출마하지 아니할 경우, 혹

은 지구 연차대회를 개최하는 시기에 지구 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국제헌장 제4조 8항의 자격을 완수하고 현재 지구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1년을 역임한 클럽회원은 누구나 본 다)항의 규정을 충족시킨다.

2. 지구부총재 입후보자의 자격은 국제헌장 제4조 8항에 따른다.

가)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준 지구의 곧 스탠딩 차터클럽의 곧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나) 소속클럽 또는 단일, 준 지구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얻어야 하며,

다) 지구 부총재직을 이을 때까지 다음 직을 역임하였거나 역임할 자,

1) 클럽회장으로 1년 또는 과반기 이상이 되고 그리고 클럽 이사회 구성원으로 2년이상.

2)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전 사무·재무총장으로 1년 또는 반기이상, 그리고 지구 임원회 구성원으로 1년이상.

3) 이상 전술한 임직을 어느것도 동시에 역임하지 않을 것.

제 10 조(감사후보자격 및 선출)

지구 대의원 대회에서 2명의 감사를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감사후보자가 2명 이내일 때는 무투표로 인준 절차를 거쳐 당선을 확정한다.

1) 2명의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지대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및 전 사무총장, 전 재무총장을 역임한 라이온이 입후보해야 한다.

2) 2명의 감사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기 총재에게 선출권을 위임하고 차기총재는 당해년도 제 1회 지구 임원회의에서 2명의 감사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1 조(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거방법)

1. 지구총재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이며 당선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총재 후보자가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한다.

2. 지구부총재의 선거는 대의원 대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무투표로 인준절차를 거쳐 당선
을 확정한다.

제 12 조(선거관리)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고 지구총재
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어 선거를 관장케 한다.

제 4 장 지구 임원의 임무와 위촉

제 13 조(총재의 임무)

국제 이사회의 전면적인 감독아래 소속지구 내에서 국제협회를
대표한다. 총재는 지구의 최고 행정관으로서 지구임원을 지휘감
독한다.

1.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2. 신생 라이온스 클럽의 조직을 지휘 감독한다.
3. 헌장을 수여받은 클럽간의 우의를 증진시킨다.
4. 지구의 대회, 회의 등을 주재한다.
5. 국제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지구부총재의 임무)

지구총재의 전면적인 지휘감독하에 지구총재의 최고 보조 시행
관 역할을 담당한다.

1.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2. 지구총재의 임무를 사전 인지하여 총재 직무 불능시를 대비한다.
3. 지구총재가 요구하는 행정임무를 수행한다.
4. 국제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지구임원의 위촉)

총재는 다음의 지구임원을 위촉한다.

사무·재무총장,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각급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위원, 다만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및 사무·재무부
총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6 조(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의 임무)

지구총재의 지휘감독하에 활동한다.

1. 사무총장은 지구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2. 재무총장은 지구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3. 부총장은 직속 총장을 보좌한다.

제 17 조(지역위원장의 임무)

지역위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임원으로서

1.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2. 지구총재에 의하여 배정된 분과위원장과 산하 지대위원장의 활동을 감독한다.
3. 신생클럽 조직과 약체클럽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 국제 이사회에 요구하는 활동과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 합동월례회를 년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제 18 조(지대위원장의 임무)

지구총재, 지구부총재, 지역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해당 지대의 최고 행정 임원으로서

1.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2. 소속지대의 총재 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정규 회의를 소집한다.
3. 소속지대의 신생클럽 조직과 모든 클럽의 활동과 복지에 관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 적어도 년 2회 이상 지대내 각 클럽 월례회에 출석하여 클럽의 봉사활동과 회원유지, 출석상황을 파악하고 월말보고 및 행정상황을 파악하여 군 스탠딩 클럽으로 유도한다.

제 5 장 지구 임원회

제 19 조(임원회 구성)

총재, 직전총재, 지구부총재, 사무·재무총장,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각급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

제 20 조(임원회 소집)

지구임원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년간 4회 소집한다.

제 21 조(임원회의 업무)

지구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1. 지구재정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
2. 지구 사업계획 확정

3. 필요한 각종 세칙의 제정
4. 연차대회 및 대의원 대회에 부의할 사항
5. 가타 총재가 부의한 사항

제 22 조(임원회의 의결)

지구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각 위원회

제 23 조(위원회의 종류)

총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마약교육 위원장, 대회진행 위원장, 클럽확장 위원장, 회원확장 위원장, 청력 및 농아사업 위원장, 당노병 예방위원장, 국제친선 위원장, 지도력개발 위원장, LEO위원장, LCIF위원장, 정보 및 홍보 위원장, 시력보존 및 맹인사업 위원장, 청소년교환 위원장, 라이온 스길 운동 위원장, 환경보전 위원장, 명예 위원장 등 지구총재는 필요에 따라 전항이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4 조(분과위원회 직무한계)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한계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25 조(설치)

총재 및 지구부총재, 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 26 조(직제와 처무)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처무규칙은 총재가 지구임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 27 조(직원의 임면)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재청으로 총재가 행한다.

제 8 장 임기

제 28 조(시기, 종기)

지구임원의 모든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임기중 결원이 있어 보선보임 되었을 때는 전 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 29 조(재정)

본 지구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지구임원의 의무금
3. 보조금
4. 기부 및 협찬금
5. 기타 수입금

제 30 조(회계)

본 지구의 회계연도는 해당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개정)

본 헌장을 개정할 때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조(준용)

본 지구헌장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제 헌장을 준용한다.

제 3 조(시행)

본 개정 지구헌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하여 국제헌장 개정일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